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4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.

발 의 자 : 민홍철 · 문진석 · 정준호
조계원 · 허성무 · 손명수
한준호 · 허 영 · 이용우
염태영 · 강준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과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, 특정 시설 출입 금지 명령 등 일정한 행동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.

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9%, 초등학교의 45%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, 특히 서울은 80% 이상에 달하고 일부 어린이집 반경 1km 내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.

이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고 법원이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·청소년의 안전을 실질적

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3, 제16조의3제2항 및 제39조제4항).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거주제한명령)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한 거주 제한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거주제한명령의 기간·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거주제한명령의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3제2항 중 “준수사항”을 “준수사항,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거주제한명령”으로 한다.

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피부착자가 제9조의3제1항의 거주제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도 제3항의 형과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3(거주제한명령) ① 법원</u> <u>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</u> <u>착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</u> <u>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 각 호</u> <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</u> <u>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한 거주</u> <u>제한을 명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거주제한명령</u> <u>의 기간·기준·절차 등에 필</u> <u>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</u> <u>한다. 이 경우 거주제한명령의</u> <u>기간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의</u> <u>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.</u>
제16조의3(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(생 략) ②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 각 호(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) 에 따른 <u>준수사항</u> 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효용 유지 의무 를 위반하거나, 위반하였다고	제16조의3(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<u>준수사항, 제9조의3제1</u> <u>항에 따른 거주제한명령</u>----- -----

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부착자에 대한 신속한 지도·감독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③·④ (생략) 제39조(벌칙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39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피부착자가 제9조의3제1항의 거주제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도 제3항의 형과 같다.</u>
--	--